

의안번호	제 2009 - 8 호
의 결	2009. 3. 23.
연 월 일	(제16차 회의)

보 고 안 건

전문위원 업무보고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목차

I. 경합범 처리기준·성범죄 집행유예 기준 검토의견	1
1. 개요	1
2. 경합범 처리기준	1
가. 경합범 기준 일반	1
나. 살인범죄 경합범 처리기준	3
다. 뇌물범죄 동종경합범 처리기준	4
3.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	5
가. 총론 ······	5
나. 참작사유 분류 방식	5
다. 참작사유	6
Ⅱ. 살인, 뇌물, 성범죄 양형기준안 의견조회 결과 검토	7
Ⅱ. 살인, 뇌물, 성범죄 양형기준안 의견조회 결과 검토 ···································	
	7
1. 개요 ···································	7
1. 개요 2. 살인범죄 양형기준안	7 7 8
1. 개요 2. 살인범죄 양형기준안 가. 유형분류	7 7 8
1. 개요 2. 살인범죄 양형기준안 가. 유형분류 나. 양형인자	7 7 8 9
1. 개요 2. 살인범죄 양형기준안 가. 유형분류 나. 양형인자 다. 집행유예 기준	7 7 8 9
1. 개요 2. 살인범죄 양형기준안 가. 유형분류 나. 양형인자 다. 집행유예 기준 1 3. 뇌물범죄 양형기준안 1	7 8 9 0 1
1. 개요 2. 살인범죄 양형기준안 가. 유형분류 나. 양형인자 다. 집행유예 기준 1 3. 뇌물범죄 양형기준안 1 가. 유형분류 1	7 8 9 0 1 1 2

가. 양형인자15
나. 집행유예 기준16
5. 기타17
III. 제16차 전체 회의 ·······18
1. 일시 · 장소 ·································
2. 참석자18
3. 주요 안건18
4. 회의 요지18
가. 양형기준 매뉴얼 보고18
나. 성범죄 양형기준 추가 검토19
IV 향후 익정21

별첨 김현석, "성범죄 양형기준 추가 검토 보고" 김현석, "양형기준안 의견조회 결과 검토의견" 이주형, "양형기준안 의견수렴에 대한 의견" 윤정근, "뇌물범죄 동종경합범 기준 보완검토"

I. 경합범 처리기준 ·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 검토의견

1. 개요

- 전문위원 제15차 전체회의 및 1팀 제22차, 2팀 제14차 회의에서 경합범 처리기준·성범죄 집행유예 기준에 관하여 제시된 검토의 견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소위원회 제7차, 제8차 회의 시 보고
- 검토 대상
 - 살인범죄 경합범 기준 보고(손철우 전문위원)
 - 뇌물범죄 동종경합범 기준 검토(김소영 전문위원)
 -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경합범 처리기준(김현석 전문위원)

2. 경합범 처리기준

○ 손철우, 김소영, 김현석 전문위원의 살인, 뇌물, 성범죄 경합범 처리기준 연구보고에 대한 검토 내용

가. 경합범 기준 일반

- (1) 양형기준의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가 경합된 경우에 어떠한 조건 하에 양형기준이 적용되도록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이 나뉨

◈ 제1안 ◈

-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끼리 경합되는 경우에 한하여양형기준이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
 -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범죄가 경합범으로 포함된 경우에는 양형기준 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하한을 준수하도록 권고하 는 것으로 충분

◈ 제2안 ◈

-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범죄와 경합된 경우라도, 재판부에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를 기본범죄로 정한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
 - 반대로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범죄를 기본범죄로 정한 경우에는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판결문상에 재판 부가 기본범죄로 판단한 범죄를 나타낼 필요가 있음

(2) 경합범 가중 방식

○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일정 비율을 합산하는 가중 방식의 적정성에 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이 나뉨

◈ 1안 ◈

- 제시된 가중 방식이 적정하다는 견해
 - 형법상 경합범 가중 방식은 처단형의 한계를 설정하는 원칙에 불과 하므로 양형기준상의 구체적인 경합범 가중 방식이 반드시 그에 따 라야 하는 것은 아님
 - 제시된 방안이 책임비례의 원칙을 실현하는 데 적합

♦ 2안 ♦

-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만을 1/2 가중하도록 제시된 가중 방식 이 적정하다는 견해
 - 제시된 기준은 지나치게 복잡하며, 양형기준의 단순성 추구에 부합 하지 않음
 - 형법 총칙상의 경합범 가중 방식과 동일한 기준 적용

(3) 일부 경합범의 양형인자 반영

- 살인범죄 경합범 처리기준에서는, 사체유기는 일반가중인자 로, 사체손괴는 특별가중인자로 처리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일부 경합범을 기본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에 서 단순한 양형인자로 반영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이에 대하여, 경합범은 경합범의 유형, 경합범에 해당하는 각 범죄의 경중, 죄질 등에 따라 최종 선고형을 결정하는 데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일부 경합범을 기본범 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를 가중하는 양형인자로 처리하는 방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반대 의견이 제시됨

(4) 상상적 경합

○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하는 범죄 중 기본범죄에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중한 사유는 가중인자로 적절히 추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5) 용어 정리

○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들 중에 가장 중한 범죄를 지칭하는 용어로, ① 보고서와 같이 '기본범죄'가 적정하다는 의견과 ② '대표범죄'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나뉘었으나, 이후 검토를 계속 진행하기로 함

나. 살인범죄 경합범 처리기준

○ 국민의 법감정 등을 고려할 때 살인범죄의 동종경합범에 대해 서는 양형기준상의 권고 형량을 누적적으로 합산하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근거로 살인범죄에 대해서만 예외 적으로 별도의 합산 원칙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데 대체적 인 다수의견이 모아짐
 - 권고 형량을 단순 합산할 경우 제시되는 형량범위가 지나치게 상향될 우려
 - 경합범 기준의 일반 원칙만을 적용하더라도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의 경우에는 권고 형량이 15년을 포섭하게 되어 무기형의 선택이 가능하고, 복수의 특별가중인자로 인한 형량범위의 특별조정까지 두고 있음
 - 경합범 기준의 일반 원칙에 대하여 불필요한 예외를 설정함으로써 양형기준의 단순성에 부합하지 아니함

다. 뇌물범죄 동종경합범 처리기준

○ 뇌물범죄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 수뢰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하는 이른바 '합산 원칙'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이 대립

◈ 찬성 ◈

- 합산 원칙을 채택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견해
 - 수뢰액 합계에 따른 구체적 타당성이 높은 양형 도출이 가능

◈ 반대 ◈

- 합산 원칙을 채택하는 방안에 반대하는 견해
 - 합산 원칙의 적용을 통해 포괄일죄와 경합범의 처리에 구별이 없어 져서는 곤란

◈ 별개 ◈

- 합산 후 유형이 바뀌는 경우에 한하여 합산 원칙을 적용
 - 뇌물 수수액을 합산한 결과 유형이 달라지지 않는 경우에는 상한만 을 조정하는 일반적인 경합범 기준을 적용

3.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

○ 김현석 전문위원의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 연구보고에 대한 검토 내용

가. 총론

- 집행유예의 본질에 관하여, 비교적 가벼운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벌 대체수단을 적극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인지, 재범의 위험성과 관련된 특별예방적 차원을 중시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양형인자로 반영된 요소를 집행유예 참작사유로 일률적으로 다시 선정할 경우, 실질적인 이중평가의 위험이 있으므로 재범위험성과의 관련성 여부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나. 참작사유 분류 방식

○ 순수하게 재범 위험성에 관련된 요소만을 '재범의 위험성'으로 분류하고,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위험한 물건의 사용 등과 같이 행위의 수단이나 결과에 관련된 요소는 '기타 사유'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다. 참작사유

(1) 소아기호증

○ 소아기호증은 전형적으로 재범 위험성에 관련된 요소로서 집행유예 참작사유로 고려할 필요는 있으나, 행위불법의 정 도에 차이를 가져온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특별양형인자로 선정하여 형량범위를 상향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 이 제시됨

(2) 임신·성병 감염

- '임신·성병 감염'은 최초부터 의도된 경우가 아니라면 재범 위험성과는 무관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이에 대하여, 발표자는 위와 같은 의견을 반영하여 위 참작 사유를 '재범의 위험성'이 아닌 '기타 참작사유'로 다시 분류 하겠다고 답변

(3) 전과

○ 집행유예 참작사유 중 '전과'를 재범 기간에 따라 세분화함 으로써 단기간에 재범한 경우에는 실형이 보다 적극 권고되 도록 집행유예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4)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가 책임이 경미한 영역에 속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낮은 정도의 불법이더라도 전과가 있는 등 반복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 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집행유예의 주요 긍정사유에서 배제하 역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의견 제시자는, 만일 집행유예의 본질을 특별예방적 차원이 아니라 선고형이 비교적 낮은 경우에 형벌 대체수단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파악한다면, 위와 같은 사유가 주요 긍정사유로 유지되어도 무방하다는 보충의견을 제시함

(5) 피고인 고령

- 신체적으로 수형이 가능한지 여부를 집행유예 결정 시 고려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고령'은 참작사유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이에 대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양형의 조건으로 범인의 연 령을 참작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는 것은 바 람직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이 제시됨
- 또한, 고령의 기준을 '75세 이상'으로 명시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Ⅱ. 살인, 뇌물, 성범죄 양형기준안 의견조회 결과 검토

1. 개요

- 양형위원회에서는 2009. 1.경 살인, 뇌물, 성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실시
- 전문위원단에서는 소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의견조회 결과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소위 원회 제8차 회의 시 보고

2. 살인범죄 양형기준안

가. 유형분류

- (1) 극심한 생활고로 인한 살인
 - 의견조회 결과, 극심한 생활고로 인한 살인은 제1유형에 포 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제시
 - 전문위원단에서는 아래와 같이 의견이 대립함

◈ 찬성 ◈

- 제1유형 정의에서 제외
 - 생활고가 살인을 정당화할 수는 없음

◈ 반대 ◈

- 제1유형 정의에 포함(종전안 유지)
 - 다만, 생활고 등 경제적 동기에 기한 살인을 전부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극도의 생계 곤란으로 인해 삶을 비관하여 가족을 살해하기에 이른 경우 등으로 제한

(2) 정신질환으로 인한 살인

- 의견조회 결과, 정신질환으로 인한 살인과 같이 동기가 불분 명한 경우에는 어떠한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정할 필요가 있 다는 의견 제시
- 전문위원단에서는, 원칙적으로 정신질환이 수반된 경우에도 해당 범행동기를 고려하여 유형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는 데 대체적인 의견이 모아짐
- 다만, 오로지 정신질환으로 인해 별다른 이유 없이 살인한 경우에는 제3유형에 속하는 '아무런 사유 없이 무작위로 타 인을 살해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보충의견

이 제시됨

나. 양형인자

(1)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의견조회 결과,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감경인자로 추가해 야 한다는 의견 제시
- 전문위원단에서는 아래와 같이 의견이 대립함

◈ 찬성 ◈

- 일반감경인자로 추가
 -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경우는 고려할 만한 사정에 해당

◈ 반대 ◈

- 양형인자에서 제외(종전안 유지)
 - 살인죄에 고유한 범행결과의 중대성을 반영

(2)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 의견조회 결과,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부부관계, 생활을 같이 하는 친족관계 등)'를 가중요소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
- 전문위원단에서는 가중인자로 추가하지 않기로 하는 데 대 체적인 의견이 모아짐
 - 개별 사안에 따라, 가중요소로만 고려될 사유라고 볼 수 없음

(3) 범행 후 증거인멸 시도

○ 의견조회 결과, '범행 후 증거인멸 시도'를 가중인자로 추가

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

○ 전문위원단에서는 아래와 같이 의견이 대립함

◈ 찬성 ◈

- 특별가중인자로 추가
 -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비난가능성이 가중
 - '자수'를 특별감경인자로 처리한 것과의 균형

◈ 반대 ◈

- 양형인자에서 제외(종전안 유지)
 - 형법 제155조(증거인멸죄)에서도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행위만을 처벌(형사소송법상의 방어권 보장 취지 고려)
 - 법률상 감경사유인 '자수'에 대응하는 인자라고 볼 수 없음

다. 집행유예 기준

(1) 중지미수

- 의견조회 결과, 살인미수범죄의 집행유예 기준에서 '중지미수'는 형 면제까지 허용하는 사유이므로 주요 참작사유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
- 전문위원단에서는 아래와 같이 의견이 대립함

♦ 찬성 ♦

- 주요 긍정사유로 추가
 - 형법상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
 - 다만, 범행을 적절히 중단하여 피해발생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고 중 한 상해 결과가 야기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

◇ 반대 ◇

- 일반 긍정사유로 유지(종전안 유지)
 - 살인죄에서는 범행의 특성상 중지미수에 해당하더라도 이미 중한 상해결과가 야기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고, 경상을 주요 참작사유 로 추출한 이상 이중 평가될 우려가 있음

(2) 범행 후 구호후송

- 의견조회 결과, 범행 후 구호후송한 피고인은 범행 후 단순 히 피해회복만 한 피고인에 비해 악성 또는 재범 위험성이 더 낮으므로 주요 긍정사유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 견 제시
- 전문위원단에서는 종전안대로 일반 긍정사유로 유지하기로 하는 데 의견이 모아짐

3. 뇌물범죄 양형기준안

가. 유형분류

- 의견조회 결과, 공범관계에서 범죄사실로 인정된 수뢰액과 피고인의 실제 이득액이 다른 경우에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
- 전문위원단에서는 공동정범의 법리상 범죄성립된 수뢰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종전안을 유지하기로 하는 데 대체적인 의견이 모아짐
- 다만, '피고인의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를 별도의 특별감경인자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의견이 제시됨

나. 양형인자

- (1) 뇌물공여자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경우
 - 의견조회 결과, 뇌물공여자가 수뢰공무원보다 우월적 지위를 가진 경우를 뇌물수수의 감경인자로 추가하자는 의견 제시
 - 전문위원단에서는 종전안대로 별도의 감경인자로 추가하지 않기로 하는 데 의견이 모아짐

(2) 범행은폐 시도

- 의견조회 결과, '범행은폐시도'를 가중인자로 추가해야 한다 는 의견 제시
- 전문위원단에서는 아래와 같이 의견이 대립함

◈ 찬성 ◈

- 특별가중인자로 추가
 - 살인죄에서 '범행 후 증거인멸'과 같은 논거

◈ 반대 ◈

- 양형인자에서 제외(종전안 유지)
 - 살인죄에서 '범행 후 증거인멸'과 같은 논거

(3) 뇌물의 종류

- 의견조회 결과, 뇌물의 종류(현금, 향응 등)에 따라 책임의 경중을 달리 판단하도록 하자는 의견 제시
- 전문위원단에서는 종전안대로 별도의 양형인자로 반영하지 않기로 하는 데 대체적인 의견이 모아짐
 - 다만, 뇌물수액의 산정방식이나 피고인의 주관적 편익에 차이 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추가 검토해야 한다는 보충의견이 제시됨

(4) 뇌물수수의 태양

- 의견조회 결과, 뇌물수수의 태양(타인 계좌 이용, 자금세탁 등)을 가중인자로 반영하자는 의견 제시
- 전문위원단에서는 아래와 같이 의견이 대립함

♦ 찬성 ♦

- 특별가중인자로 추가
 -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 내지 범행은폐 시도의 전형에 해당

◈ 반대 ◈

- 양형인자에서 제외(종전안 유지)
 - 타인의 계좌로 뇌물을 수수한 경우와 피고인 명의 계좌나 현금으로 대범하게 수뢰한 경우 사이에 책임의 경중을 가리기 어려움
 - 뇌물수수는 기본적으로 부정적 수법에 의한 범행임을 전제로 성립

(5) 내부비리 고발

- 의견조회 결과, 뇌물공여자의 내부비리 고발을 보다 세분하 여 인자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
- 전문위원단에서는 아래와 같이 의견이 대립함

- 보다 세분하여 특별/일반양형인자로 반영
 - 수사개시 전후 등을 기준으로 구분 가능

◈ 반대 ◈

- 특별감경인자로만 유지(종전안 유지)
 - 수사협조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내부비리 고발에 대해서만 특별 취 급을 하는 것은 부적절

(6) 여죄 추정

○ 의견조회 결과, 뇌물수수죄의 가중인자로 '공소제기된 범죄 사실 외에 다른 여죄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를 추 가하자는 의견 제시

다. 집행유예 기준

- (1) 뇌물수수액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
 - 의견조회 결과, 뇌물수수에서도 일정액 이상의 수뢰액을 주 요 부정사유로 추가하자는 의견 제시
 - 전문위원단에서는 아래와 같이 의견이 대립함

◈ 찬성 ◈

- 주요 부정사유로 추가
 - 뇌물공여와의 균형을 고려
 - 구체적으로, 2,0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설정

◈ 반대 ◈

- 별도의 주요 부정사유에서 제외(종전안 유지)
 - 뇌물수수의 경우 뇌물공여와 달리 수뢰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예외 없이 실형이 권고되기 때문에 주요 참작사유를 추가할 필요가 없음
 - 특별법에 의한 가중처벌이 규정되지 않은 뇌물공여와는 구별 가능

(2) 수사개시 전 자수

- 의견조회 결과, '수사개시 전 자수'를 별도의 집행유예 주요 긍정사유로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
- 전문위원단에서는 종전안대로 별도의 주요 긍정사유로 추가

하지 않기로 하는 데 대체적인 의견이 모아짐

- 주요 참작사유로 이미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포함)'이 선정

(3) 동종 전과

○ 의견조회 결과, 뇌물수수의 집행유예 부정사유로 '동종 징계 전력'만이 규정되어 있으나, '동종 전과'를 추가하는 것이 타 당하다는 의견 제시

4. 성범죄 양형기준안

가. 양형인자

(1) 처녀막 파열

- 의견조회 결과, '처녀막 파열상'을 중한 상해결과 발생의 예 로 포섭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
- 전문위원단에서는 종전안을 유지하기로 하는 데 의견이 모 아짐
 - 피해자의 처녀성 유무에 따라 책임의 정도에 차이를 부여할 필요는 없음

(2) 소아기호증

- 의견조회 결과, '소아기호증에 의한 경우'는 치료의 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책임을 가중하는 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부적 절하다는 의견 제시
- 전문위원단에서는 종전안을 특별가중인자로 유지하기로 하 는 데 대체적인 의견이 모아짐

(3) 유족 처벌불원

- 의견조회 결과,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특별인자인 '유족 처벌불원'의 정의에서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를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
- 전문위원단에서는 아래와 같이 의견이 대립함

- 합의에 준하는 상당금액 공탁을 제외
 - 성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

◈ 반대 ◈

- 인자 정의에 포함(종전안 유지)
 - 살인죄의 경우와 일관된 인자 정의가 바람직

나. 집행유예 기준

- (1) 친족관계 범행 시 과거 부양사실 등
 - 의견조회 결과, 친족관계 성범죄에서, '과거 부양 또는 향후 부양 예정사실'을 긍정적 참작사유에서 제외하거나, 부정적 참작사유로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
 - 전문위원단에서는 제시된 의견과 같이 긍정적 참작사유로 명시하지 않기로 하는 데 대체적인 의견이 모아짐
 - 다만, 별도의 부정적 사유로 추가할 필요는 없음

(2) 신분상실 등

○ 의견조회 결과, 신분상실 또는 명예실추, 본건 관련 징계처분 등을 고려해서는 안되는 요소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

- 전문위원단에서는 일반인과의 형평성 등의 이유로 별도 긍 정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데 대체적인 의견이 모아짐
- 다만, 뇌물죄와 달리 별도의 배제사유로 명시할 필요는 없다 는 보충의견도 제시됨

(3) 합의

- 의견조회 결과, 청소년·친족·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경우 '합의'를 고려해서는 안되는 요소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
- 전문위원단에서는 실질적 강요에 의한 합의가 '합의'로 해석 되지 않도록 참작사유 정의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체적인 의견이 모아짐

5. 기타

- 아래와 같은 추가 의견이 제시됨
 - 모든 범죄에 대해 누범(동종·이종 불문) 및 5년내 실형전력을 특별가중인자로 처리하는 등의 일관된 전과 반영방식 수립이 필요
 - 살인미수범죄 집행유예 기준의 주요 부정사유인 '2회 이상 동종 전과'를 '1회 이상 동종전과'로 변경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에서 '미성년 상대 성범죄 전력'을 특별가 중인자로 추가

Ⅲ. 제16차 전체 회의

1. 일시ㆍ장소

○ 일시 : 2009. 3. 13. 14:00 ~ 19:2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2. 참석자(12명)

○ 수석전문위원, 김용철, 김현석, 박영식, 박형관, 윤정근, 이주형, 이 천현, 이호중, 진선미, 최석윤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간사)

3. 주요 안건

- 양형기준 매뉴얼 보고
- 성범죄 양형기준 추가 검토

4. 회의 요지

가. 양형기준 매뉴얼 보고

- 손철우 전문위원이 담당하던 '양형기준 총론 매뉴얼 작성' 연 구를 김현석 전문위원이 담당하기로 하되, 이주형 전문위원도 종전대로 병행하여 연구를 진행하기로 함
- 김현석 전문위원이 '양형기준 해설 총론'(초안)을 제출하고 작 성 경위와 개요 등을 보고
- 차회 회의에서 양형기준 매뉴얼에 관한 토의를 계속 진행할 예정

나. 성범죄 양형기준 추가 검토

- 김현석 전문위원이 성범죄 양형기준에 대한 추가 검토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
-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8), (9) 항목 에 관해서는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

(1) 특가(누범)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기준 의 양형인자에서 '특가(누범)'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
 - 법률상 특가(누범)이 적용되지 아니함

(2) 강제추행치상과 유사성교 행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13세 이상 대상 성폭법 제8 조의2 제2항 각호의 행위(유사성교 행위)에 의한 강제추행은 제1유형 중 특수강제추행과 같은 유형에 포섭"이라는 서술 식 문구를 추가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유사성교행위를 특수강제추행 에 준하여 처리할 필요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기준에서 서술식 문구인 "성폭법 제8조의2 제2항 각호의 행위에 의한 강제추행 및 그 상 해·치상은 제2유형에 포섭"중 밑줄 부분을 삭제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

(3)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성범죄의 유형 표시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성범죄에서 유형 구분에 세부번호(예 : 제1-1유형, 제1-2유형 등)를 부여 - 해당 유형을 보다 쉽게 특정하기 위해 필요

(4)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성범죄와 특강(누범)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특강(누범)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한다는 서술식기준을 추가
 - 강도범죄 및 다른 성범죄 기준과의 일관성 유지

(5)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성범죄와 계획적 범행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서 특별가중인자인 "계획적"을 "계획적 범행(제2유형)"으로 수정
 - 성범죄가 아닌 살인에 대해서 계획적인 경우를 의미

(6) 중한 상해

- 집행유예 기준에서 주요 부정사유인 '중상·후유장애'를 '중 한 상해'로 변경
 - '중한 상해' 개념에 후유장애가 포함됨

(7) 동종의 정의

- 동종 전과(또는 동종 누범)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범죄를 의미한다"는 정의 규정을 추가
 - 실무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

(8) 강도강간/특수강도강제추행과 중한 상해

○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와 강제추행의 각 제3유형(강도강간, 특수강도강간, 특수강도강제추행)에 있어 "중한 상해"를 특 별가중인자로, "중한 상해가 아닌 상해"를 일반가중인자로 각 추가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양형기준으로 포섭

(9)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성범죄와 강도

- 특별가중인자로 "강간죄 제3유형 또는 강제추행 제3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형법 제339조(강도강간) 또는 성폭법 제5조 제2항(특수강도강간등)이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를 추가
- 일반가중인자로 "강간죄 제2유형, 강제추행 제2유형,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성폭법 제5조 제 1항(주거침입강간등), 제6조(특수강간등), 제7조(친족관계강간 등), 제8조의2(13세 미만 대상 강간등)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를 추가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다양한 유형 내에서 구체적으로 타당한 양형 도출을 위해 필요

Ⅳ. 향후 일정

○ 전문위원 제17차 전체회의는 양형위원회 제16차 회의 결과 등을 참조하여 3월 하순경에 개최하기로 함